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4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문화교류플랫폼 공공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Ⅰ.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제74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문화교류플랫폼 준공 및 이관 예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탁시설개요

- 시 설 명 : 문화교류플랫폼
- 위 치 : 서산시 번화3길 6-4 (동문동 958-1)
- 임차기간 : 2014. 9. ~ 2027. 6. (보증금 450백만원, 월임차료 247천원)
- 위탁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 위탁시설규모 : 연면적 1,254㎡ / 지상4층
- 근무인원 : 4인(교대근무)
- 운영시간 : 월 ~토 09:00 ~ 21:00 (일·공휴일 휴관)
- 위탁시설현황

| 구 분 | 면적(㎡) | 내 용 |
|---|---|---|
| 1층 | 1,254㎡ | 사무실, 레지던시 작업실 |
| 2층 | | 전통문화 프로그램실, 생활문화 교육실 |
| 3층 | | 소공연장, 다목적실 |
| 4층 | | 소방시설(물탱크) |

○ 위탁 추진 계획

- 위탁사무 : 문화교류플랫폼 위탁
- 위탁예산 : 금275,796천원

(단위 : 천원)

| 총 계 | 인건비 | 사무운영비 | 활성화 사업비 |
|---|---|---|---|
| 275,796천원 | 157,922 | 87,874 | 30,000 |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공위탁(수의계약)

○ 위탁사무내용

- 문화교류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물 관리 등

## Ⅲ. 검토의견

###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 준공·이관 예정인 문화교류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맡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가. 위탁의 법적 근거와 대상사무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서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서는 재단이 시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시설관리 사무 및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등을 위탁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위탁의 필요성**

- 문화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사업 추진시 전문성 제고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문화교류플랫폼은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는 운영관리 원가 산정 용역 결과가 있었음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위탁 기간 적절성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10조 및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Ⅲ. 종합검토

가. 본 동의안은 준공 후 이관 예정인 문화교류플랫폼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지방자치법」「지방출자·출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위탁 및 위탁방법등의 법적 근거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문화교류플랫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되어 도시과에서 이관될 예정으로,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라. 문화예술 창작과 레지던시 운영, 각종 프로그램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마. 유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재)서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바. 또한 문화교류플랫폼은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는 운영관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있었음

사. 상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